



대출자격

- 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(기본)」을 신청하거나 보유 중인 군 간부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 결하고 서울보증보험(취의 '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' 발급이 가능한 고객
 - ※ 「KB 군 간부 월세자금대출」을 통해 국방부에서 월차임을 지원받거나 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(기본)」 대출에 대한 국방부의 이자지원이 중단된 고객은 대출대상이 아닙니다.
- ※ 임대인 자격: 임차목적물을 소유한 개인, 공공주택사업 자, ㈜부영주택
-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*이내인 고객
 - * 보유 중인 주택이 2020.7.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 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 외. 단,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

대출한도

- 「기본대출」과 「추가대출」 합계 최대 5억원 이내로 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기준
 - ☞ 서울보증보험㈜에서 산출한 등급별 최대 보증한도
 - ☞ 임차보증금의 95% 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(기 본)」
 - ☞ 시세(매매가)의 80% 임차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
 - 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(기본)」
 - ☞ (1주택 보유자) 3억원 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(기본).
 - ※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,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 에 의해 결정됩니다.

대출기간

- 대출기간: 3개월 이상 3년 이내 (임차계약 종료일 이내, 임대기간 연장시 「KB 군 간부 전세 자금대출(기본)」을 보유하고 이자지원이 중단되지 않은 경 우 매회 3년 이내로 연장 가능)
- 상환방법: 만기일시상환, 원(리)금균등 분할상환

전세자금대출 | 영업점신청

상품안내

상품특징

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(기본)」을 신청하거나 보유 중인 군 간부가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대출상품

대출신청자격

- ●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(기본)」을 신청하거나 보유 중인 군 간부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㈜의 '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' 발급이 가 능한 고객
 - ※「KB 군 간부 월세자금대출」을 통해 국방부에서 월차임을 지원받거나「KB 군 간부 전세 자금대출(기본), 대출에 대한 국방부의 이자지원이 중단된 고객은 대출대상이 아닙니다.
- ※ 임대인 자격: 임차목적물을 소유한 개인, 공공주택사업자, ㈜부영주택
-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* 이내인 고객
 - * 보유 중인 주택이 2020.7.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, 단,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

대출금액

- 「기본대출」과 「추가대출」 합계 최대 5억원 이내로 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기준
 - 서울보증보험㈜에서 산출한 등급별 최대 보증한도
 - ☞ 임차보증금의 95% 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(기본)」
 - ☞ 시세(매매가)의 80% 임차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(기 본),
 - ☞ (1주택 보유자) 3억원 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(기본)」
 - ※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,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.

-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* 대출기간 : 3개월 이상 3년 이내 (임차계약 종료일 이내, 임대기간 연장시 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(기본)」을 보유하고 이 자지원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 매회 3년 이내로 연장 가능)
 - 상환방법: 만기일시상환, 원(리)금균등 분할상환

대출대상주택

• 아파트, 연립, 다세대, 단독주택(다가구주택 제외), 주거용오피스텔 단, 연립·다세대·단독 주택의 경우 [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 + 임차보증금] 합계가 시 세의 90% 이내인 경우에만 취급가능

대출신청시기

- * 신규임차자금 : 입주 7영업일 이전 신청
- 생활안정자금 : 임차기간 중 신청(계약종료 3개월 이전)

금리 및 이율

대출금리

(기준일자: 2024.11.29 (연이율, %))

구분	기준금리	가산금리	우대금리	최저금리	최대금리
신 잔액 COFIX6개월	3.09%	1.55%	-	4.64%	4.64%

- * (1) 기준금리: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「신 잔액기준COFIX」 연동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
 - (2) 최종금리: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시점의 기준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 다.

중도상환수수료

* 면제

연체이자(지연배상금) 에 관한 사항

- ① 연체이자율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*)
- *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- ※ 단.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.0%D
- 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- ☞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- :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 가 적용되고,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☞ 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- :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자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※ "개인채무자보호법"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(약정금액 기준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 금액 기준)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
- 상기 '② 항'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

●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
대출계약철회권

계약서류 수령일, 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: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·대출만기 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위법계약해지권

- 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,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·계약체결일·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기간 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*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
이용안내

담보

- *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
- ▼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
-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

부대비용

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① 인지세:「인지세법」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

대출금액	5천만원 이 하	5천만원 초과 ~1억원 이하	1억원 초과 ~10억원 이하	10억원 초과
인지세액	비과세	7만원 (각각 3만5천 원)	15만원 (각각 7만5천 원)	35만원 (각각 17만5천 원)

- ② 보험료: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보증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
- ③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(3만원)은 고객이 부담
-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.

대출상환 관련 안내

- 이자 계산 방법 :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(윤년은 366)로,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-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
 - ※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 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「상품안내」의 "대출기간 및 상환방법"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(1) 일시상환대출: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,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 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.
 - (2) 원리금균등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.
 - (3) 원금균등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.
 - (4) 할부금고정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,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
 - (5) 혼합상환: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,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.
 - (6) 통장자동대출: '매일의 잔액'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(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)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.
- 휴일 대출 상환
 -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.(단, 외부 기관 협 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)

기한연장 관련 안내

-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,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 요한 절차(기한연장, 재대출, 대출상환 등)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단,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.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 터넷뱅킹, 콜센터,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.
- * ※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.

유의사항 및 기타

익 상실에 대한 안내

- **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**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,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.
 -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. 연체기간에 따라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과 『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』에 따라 "연체정보 등"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

-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비용(3만원)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,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 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,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
 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
-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,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,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, 각 기준금리
 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(P)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(☎1588-9999)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(www.kbstar.com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5555-4호(2024.11.26)]

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

2024.11.29~2026.10.31

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기존고객 적용여부
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금액 (2019.02.18 변경)	임차보증금의 80%주) - 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 출(기본)」 주) 임대인이 공공주택사 업자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95%	임차보증금의 95% - 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(기 본))」	미적용
대출금리 (2019.11.08 변경)	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 + 1.75%p	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 + 2.00%p	적용 (기한연 장하는 경우 변 경)
대출신청자격 (2020.01.20 변경)	* 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 출(기본)」을 신청하거나 보유 중인 군 간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	*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 출(기본)」을 신청하거나 보유 중인 군 간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	미적용

	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보증보험(주)의 '개인금융 신용보험증권' 발급이 가능 한 고객 * 「KB 군 간부 월세자금대 출」을 통해 국방부에서 월 차임을 지원받거나 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(기 본)」 대출에 대한 국방부 의 이자지원이 중단된 고 객은 대출대상이 아닙니 다. ※임대인 자격:임차목적 물을 소유한 개인, 공공주 택사업자, (주)부영주택 *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 자 포함)의 합산 주택보유 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	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보증보험(주)의 '개인금융 신용보험증권' 발급이 가능 한 고객 * 「KB 군 간부 월세자금대 출」을 통해 국방부에서 월 차임을 지원받거나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(기 본)」 대출에 대한 국방부 의 이자지원이 중단된 고 객은 대출대상이 아닙니 다. ※임대인 자격: 임차목적 물을 소유한 개인, 공공주 택사업자, (주)부영주택 *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 자 포함)의 합산 주택보유 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(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 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. 단,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)	
대출한도 (2020.07.10 변경)	□「기본대출」과「추가대출」합계 최대 5억원이내로 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기준 ☞ 서울보증보험㈜에서 산출한 등급별 최대 보증한도 ☞ 임차보증금의 95% - 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(기본)」 ☞ 시세(매매가)의 80% - 임차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- 「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(기본)	□ (좌 동) ☞(좌 동) ☞(좌 동) ☞(좌 동) ☞(좌 동) ☞(자 등)	미적용
철회권 제외대 상 (2021.03.2 5)	* 비대상	* 대상	미적용

대출신청자격 (2023.03.0 2)	-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 자포함)가 합산한 주택보 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(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) 이내인 고객(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 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이거나, 2020.7.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 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. 단, 실수요증 빙시 예외취급가능)	-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 자 포함)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* 이내인 경우 * 보유 중인 주택이 2020. 7.10일 이후 투기지역 또 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 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 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 외. 단, 실수요 요건을 증빙 하는 경우 신청 가능	적용
대출금리 (2023.10.1 7)	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 + 2.00%p	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 + 1.70%р	적용 (기한연 장 시)
대출대상주택 (2024.07.1 0)	* 아파트, 연립, 다세대, 단 독주택(다가구주택 제외), 주거용오피스텔	* 아파트, 연립, 다세대, 단 독주택(다가구주택 제외), 주거용오피스텔 단, 연립·다세대·단독 주 택의 경우 [해당물건 선순 위 설정최고액 + 임차보증 금] 합계가 시세의 90% 이내인 경우에만 취급가능	미적용
대출금리 (2024.11.2 9)	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 + 1.70%p	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 + 1.55%p	적용 (기한연 장 시)

필요서류

- *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)
-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서 원본(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)
-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(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)
-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(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)
- 임차물건지의 전입세대열람내역(임차물건지가 단독주택인 경우)
- * 복무확인서 등 임관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
- (필요시) 소득확인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